

2020년 객관식 소방공무원법 정오표(7.31)

페이지(p)	오(수정 전)	정(수정 후)
p 9 4번 해설	3분의 2를	전액을
p 10 9번 해설 ④	3분의 2를	전액을
p 21 41번 ①②③④	2019년	2020년
p 75 94번 ③	직위해제기관	직위해제기간
p 120 박스	별도정원에	별도정원에 해당하여
p 215 9번	지방공무원의	국가공무원의
p 298 110번 박스	불리한 처분을	불리한 처분을 받은
p 300 116번	소방공무원이	소방공무원의

소방공무원징계령 개정 [대통령령 제30883호 개정·시행, 2020. 7. 28.]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 사유의 입증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의무화하며,

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,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·의결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·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,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행위가 공식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며 근무 성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<법제처 제공>

2. 개정 내용

- 1) 제13조(심문과 진술권) 제4항 보완 :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.

※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2) 제14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에 제3항 및 제4항 신설

- ①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(제14조에 제3항)

※ 제11조제1항 단서 :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- ②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(제14조에 제4항)

3) 제14조의2(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) 신설

-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,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, 증인,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 이 항에서 "출석자"라 한다)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·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, 회의 내용·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4) 제16조 제2항(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사항)

- ① 종전의 규정 : 평소 행실, 근무 성적, 공적(功績), 누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개정 내용 : 혐의 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.
 - ㉠ 추가 부분 : 혐의 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그 밖의 사정
 - ㉡ 삭제 규정 : 근무 성적,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
- ③ 부칙 제3조 :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5) 제19조의3(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서 청구서 기재사항 중 4호)

- ① 종전 규정 : 평소 행실, 근무 성적, 공적(功績), 누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
- ② 개정 내용 :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(혐의 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)

6) 제20조의2(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) 신설

-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.
 - 1. 녹음기, 카메라, 휴대전화 등 녹음·녹화·촬영이 가능한 기기
 - 2. 흉기 등 위험한 물건
 - 3.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
-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- 1. 녹음, 녹화, 촬영 또는 중계방송
 - 2.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
 - 3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

소방공무원법 보충 내용 : 소방공무원기장령(시행, 2020.5.4.)

1. 소방공무원기장령의 의의

1) 개정 이유 : 소방공무원기장(소방기장)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기장의 종류에 공로기장 및 경력기장을 추가하여 기장을 통해 이력과 활동경력을 알 수 있도록 하며, 수여 대장은 전자적 처리로 작성·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※ 기장 : 일종의 명예 표시로 훈장·표창·기념장 등을 받은 사실을 정복에 부착하는 장식물

2) 목적 :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(법 제2조)

1) 소방기장의 종류 :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,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① 소방지휘관장 :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

② 소방근속기장 :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(안전장 10년, 봉사장 20년, 소방장 30년, 헌신장 40년 이상 근속)

③ 소방공로기장 :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

④ 소방경력기장 :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

⑤ 소방기념장 :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

2) 소방기장의 대리 수여 :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3)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(제3조) : 소방청장이 정한다.

3. 수여 및 패용

1) 수여권자(제4조)

① 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수여하며, 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.

② 수여 시기 : 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, 근속기장, 공로기장 및 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, 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.

2) 수여대상자의 추천(제4조의2) :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3) 정복착용시 패용(佩用, 제5조) : 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,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. 소방기장은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. 다만,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4.>

4) 수여대장(제6조) :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·관리해야 하며,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
5) 운영규정(제7조) :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